

이주현 노무사 「핵심정리 사회보험법」
제7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새흐름 20220428)

P7 내용수정

〈변경 전〉

사용자100%부담	원칙	$\Sigma(\text{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times \text{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Sigma(\text{근로자의 개인별보수총액} \times \text{출퇴근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
	예외	출퇴근 재해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 결정시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재해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

〈변경 후〉

사용자100%부담	$\Sigma(\text{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times \text{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 \Sigma(\text{근로자의 개인별보수총액} \times \text{출퇴근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
-----------	---

P8 내용수정

〈변경 전〉

실업급여보험료율 ^{노⑩⑪}	실업급여보험료율 = 1.6%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보험료율 = 2% // 예술인·노무제공자 = 1.4%
-------------------------	--

〈변경 후〉

실업급여보험료율 ^{노⑩⑪}	실업급여보험료율 = 1.6%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보험료율 = 2% // 참고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4%
-------------------------	---

P9 내용수정

〈변경 전〉

산재보험 ^{노⑤}	도급등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자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
--------------------	-----	---

〈변경 후〉

산재보험 ^{노⑤}	도급등	개별실적요율 산정시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가 ①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작업의 도급금지 또는 도급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②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및보건조치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③산업안전보건법상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받은 도급의)하도급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중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④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해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을 재해발생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자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
--------------------	-----	---

P10 내용추가

〈변경 전〉

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 제조업 • 임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변경 후〉

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 제조업 • 임업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하수도업
----	--	--

P15 내용수정

〈변경 전〉

보수총액	노무비율 적용 (보수...	별목업	별목재적량 × 노무비율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할 수 있다. (개산보험료=별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료율)
------	----------------------	-----	---

〈변경 후〉

보수총액	노무비율 적용 (보수...	별목업	별목재적량 × 노무비율을 보수총액으로 수 있다. (확정보험료=별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료율)
------	----------------------	-----	---

P44 내용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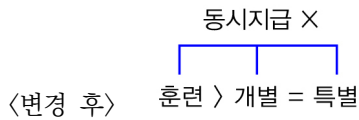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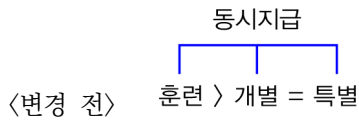
〈변경 전〉

동시가입 등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일단 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 + 9개월 + 노무제공자 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월단위) + 12개월
--------	------------------------	--	--

〈변경 후〉

동시가입 등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 1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일단 위) ÷ 180일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 위기간(월단위) ÷ 9개월 + 노무제공자 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월단위) ÷ 12개월
--------	------------------------	--	---

P52 내용수정



P64 내용수정

<변경 전>

수습기간,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동일
--------------	---------------

<변경 후>

수습기간, 소정급여일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동일
--------------	---------------

P84 내용수정

<변경 전>

의료기관 변경요양	㉠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인력·시설 ...	<p>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옮겨(전원) 요양하게 할 수 있다.</p> <p>요양중인 근로자는 ㉠㉡㉢ 해당시 공단에 직접 전원요양 신청 可</p>
	㉡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 공단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	

<변경 후>

의료기관 변경요양	㉠ 요양 중인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인력·시설 ...	<p>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옮겨(의료기관 변경) 요양하게 할 수 있다.</p> <p>요양중인 근로자는 ㉠㉡㉢ 해당시 공단에 직접 의료기관 변경요양 신청 可</p>
	㉡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 공단이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	

P96 내용수정

〈변경 전〉

일시중지 가능 보험급여	의무 미이행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 전원요양 지시 거부의 경우에는 휴업급여or상병보상연금or진폐보상연금
-----------------	--

〈변경 후〉

일시중지 가능 보험급여	의무 미이행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 의료기관 변경요양 지시 거부의 경우에는 휴업급여or상병보상연금or진폐보상연금
-----------------	---

P125 내용추가

〈변경 전〉

환수금의 고지	공단은 환수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려면 ... ⇒ 납입의 고지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

〈변경 후〉

환수금의 고지	공단은 환수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려면 ... ⇒ 납입의 고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신청 필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	---

P133 내용수정

〈변경 전〉

수급권자 및 순위	유족연금과 동일
-----------	----------

〈변경 후〉

수급권자 및 순위	본인으로 하되, 본인이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유족연금과 동일
-----------	---

P156 내용수정

〈변경 전〉

급여의 정지 노⑩⑪⑬⑯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급여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단, ③④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

〈변경 후〉

급여의 정지 노⑩⑪⑬⑯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급여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단, ②③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